# 제 1장 총칙

## 제 1조 [동아리 명칭]

본 동아리의 명칭은 ‘한국기독학생회’ 혹은 ‘IVF’라 칭한다. IVF는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의 약자이다.

## 제 2조 [소속]

① 본 동아리는 한국IVF 소속이다.

② 한국IVF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국제 복음주의 학생회 IFES 소속된 선교단체이다. IFES는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의 약자이다.

③ 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기독학생연합 소속이다.

④ 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 소속이다.

## 제 3조 [목적]

본 동아리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라는 비전을 가진다.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중심에 둔 복음주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훈련한다.

② 팀으로 활동하며 관계를 통한 성장을 지향하는 동역 공동체를 세운다.

③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모든 영역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한다.

④ 현장의 상황과 문화를 고민하고 이에 적합한 운동을 펼치는 현장 중심의 자발성을 기른 다.

⑤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감당하여 삶의 전 영역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총 체적 복음 사역을 행한다.

## 제 4조 [동아리 소재]

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로 한다. 동아리방은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해 주는 곳으로 한다.

# 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

## 제 5조 [임원진의 임기]

① 임원진은 대표, 리더로 정의한다.

② 리더의 임기는 2년이다.

③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 제 6조 [임원진 선출 방식]

① 리더는 10조 ②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한다.

1. 지원자는 동아리 내 리더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지원자는 LTC 지원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다.
3. 지원자의 지원서와 인터뷰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한다.
4. 지원자는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프로그램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대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한다.

1. 후보 리더들은 한 학기 동안 기도하며 임원진과 소통한다.
2. 임원진과 간사의 논의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 제 7조 임원진

① 대표는 동아리내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대외적으로 동아리를 대표한다.

② 리더는 해당 학기 상황에 맞는 부서를 설립 및 운영하고, 동아리 내 모임의 장 역할을 수 행한다.

## 제 8조 [집행부]

① 집행부는 임원진으로 구성되며 그 활동연차와 담당 부서에 상관없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지닌다.

② 집행부 의결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 제 9조 [집행부 회의]

① 집행부 회의는 임원진과 간사로 구성되며 매주 1회 진행한다. 방학, 시험기간 등 상황에 따라 주기를 조율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기록하여 문서로 남긴다.

# 제3장 회원

## 제 10조 [구분 및 자격]

본 동아리의 회원은 리더, 멤버, 간사로 구분한다.

① 멤버

* 1. 리더를 제외한 모든 회원을 멤버라 칭한다.
  2. 숭실대학교 재/휴학생
  3. 본 동아리의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모임에 참여하는 자

② 리더

1. 학기 중 리더훈련과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를 수료한 자를 리더라 칭한다.
2. 본 동아리에서 멤버로 1년 이상 활동한 자
3. IVF 운동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자
4. 일정 기간 리더로 본 동아리를 섬기기로 약속한 자

③ 간사

1. 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IFES와 한국IVF가 파송한 자를 간사라 칭한다.
2. 본 동아리를 졸업한 자
3. 한국IVF의 간사 선발을 통과하고 간사 훈련을 받은 자

## 제 11조 [권리과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동아리의 예배와 모임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본 동아리의 제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건의하고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③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제반 행정에 대한 문서나 기록물을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제 12조 [가입]

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임원진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② 본 동아리의 가입은 입회원서를 모두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본 동아리의 입회원서 작성은 반드시 임원진과 대면으로 작성한다.

## 제 13조 [탈퇴]

① 본 동아리의 탈퇴는 회원이 집행부에 통지(대면 또는 서면)함으로써 이뤄진다.

② 입회원서 등 회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는 탈퇴 후 즉각 삭제한다.

# 제 4장 활동

## 제 14조 [활동 내용]

본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활동한다. 구체적 주제이나 모임의 형태는 상황에 맞게 구 성한다.

① 귀납적 성경 연구 및 성경 공부

② 성경적 세계관 적립

③ 학생 자발 운동

④ 총체적 복음에 근거한 일상영성훈련

⑤ 복음전도와 세계선교

## 제 15조 [정기모임]

본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진행한다.

① LGM

1. LGM은 Large Group Meeting의 약자로서 동아리 전체 회원이 모이는 모임이다.
2. 모든 동아리 회원이 참가할 수 있고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3. LGM의 주 활동은 예배, 강의, 워크샵 등이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학기별 일시와 주기, 커리큘럼, 담당자는 해당 학기 임원진의 결정을 따른다.
4. 모든 회원은 LGM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임원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다.

② DPM

1. DPM은 Daily Prayer Meeting의 약자로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모임이다.
2. 모든 회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3. 학기별 일시와 주기, 커리큘럼, 담당자는 챕터에서 정한다.

③ 소그룹

1. 리더와 멤버로 구성된 작은 단위의 모임으로 본 동아리의 신앙 훈련을 진행한다.
2. 소그룹은 학기 단위로 진행되며 소그룹 배정과 커리큘럼은 해당 학기 임원진의 결정을

따른다.

1. 소그룹의 일시는 각 소그룹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소그룹원은 소그룹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소그룹 리더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
3. 소그룹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은 해당 학기 임원진과 상의 후 소그룹 배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연합수련회

1.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남서울지방회에 소속된 11개 학교 IVF와 연합 수련회를 진행한다.

⑤ 필요에 따라 정기 모임 외의 비정기적 모임 및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제 16조 [총회]

① 총회는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로 구분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본 동아리 대표가 맡는다. 대표 부재 시에는 대표가 지정한 리더가 맡는다.

③ 개강총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1. 임원진 소개
2. 해당 학기 방향성 및 부서 발표
3. 학사일정 발표

④ 종강총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1. 결산보고
2. 회칙 개정 투표 진행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 제 5장 재정

## 제 17조 [수입]

① 본 동아리의 수입은 회원들의 헌금, MS, 후원금, 학교 지원금으로 정하며, 이는 본 동아리 활동비 및 선교헌금으로 사용된다.

## 제 18조 [회비]

① 본 동아리는 정기 회비를 걷지 않는다.

② 필요시 개별 모임마다 필요한 회비를 걷을 수 있다.

## 제 19조 [MS]

① MS는 Mission Support의 약자로서 남서울IVF 선교헌금으로 사용된다.

② 본 동아리는 매월 MS를 장려한다. 금액은 개인이 작정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 제 20조 [후원금]

① 후원금은 졸업생 등 외부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후원금은 후원자의 후원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후원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 진이 회의를 통해 사용방향을 결정한다.

## 제 21조 [결산보고]

① 재정담당자는 종강총회에서 해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 제 6장 징계

## 제 22조 [목적]

① 본 동아리의 목적과 반하는 활동을 하는 회원, 이단 활동을 하는 회원을 제명함으로 동아 리의 목적과 정체성을 지키고 회원들을 보호한다.

## 제 23조 [제명]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진과 간사가 논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한기총 및 교목실에서 이단으로 명시한 단체에 속한 자
2. 본 동아리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타 회원에게 권유한 자

# 제 7장 동아리 등록

## 제 24조 [등록]

① 동아리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 제 8장 부칙

## 제 25조 [회칙 발효]

① 각 개정안의 개정회칙은 다음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초판 [2020.03.26.]

## 제 26조 [회칙 개정]

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 반수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